

##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임기제 5급 상당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 
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.

2021. 5. 31.

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



### 1. 채용분야 및 인원

| 채용예정<br>직무분야           | 채용등급                  | 채용<br>인원 | 채용기간<br>(근무시간)      | 직무내용<br>(담당업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무<br>부서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서구보건소<br>한방진료실<br>한의사  | 지방일반<br>임기제<br>(5급상당) | 1명       | 임용약정일<br>로부터<br>2년간 | ○ 서구보건소 한방진료실 업무<br>- 한방진료서비스 제공<br>- 한방 건강교육 실시<br>- 금연사업과 연계한 금연침 시술 등<br>○ 기타 보건소 업무 지원<br>- 감염병 대응 업무 등 | 서구보건소<br>보건행정과 |
| 서구보건소<br>구강진료실<br>치과의사 | 지방일반임기<br>제<br>(5급상당) | 1명       | 임용약정일<br>로부터<br>2년간 | ○ 서구보건소 구강진료실 업무<br>- 치과진료 및 구강검진<br>○ 구강보건사업<br>○ 기타 보건소 업무 지원<br>- 감염병 대응 업무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구보건소<br>건강증진과 |

\*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21조의4에 의거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 
연장 가능

\* 채용근무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2조에 의거 임용약정 해지 가능

\*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  
원이 발생한 경우,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순  
위자 순으로 선발

## 2. 근거법령

- ☐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(대통령령 제24853호)
- ☐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☐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(신규임용)
- ☐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조의 2(임기제공무원의 종류)
- ☐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21조3(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- ☐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제34조(연봉 및 연봉한계액) 별표 13

## 3. 응시자격

- ☐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최종일)
 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
  - 「의료법」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
### 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)
  - 가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▶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1. 공공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2.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보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 |  |
| ④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
- 성별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(면접시험 최종일 기준))
- 거 주 지 : 제한없음
- 응시연령 : 20세이상
- 자격제한(공고일 현재 기준)

| 채용예정 분야                | 자격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구보건소<br>한방진료실<br>한의사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기술자격법, 의료법 제5조에 의한 한의사 면허증 소지자</li> <li>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제2항제2호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 제1항제3호, 「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로서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</li> </ul> <p>※ 위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</p> |
| 서구보건소<br>구강진료실<br>치과의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기술자격법, 의료법 제5조에 의한 치과의사 면허증 소지자</li> <li>○ 공공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의 의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</li> </ul> <p>※ 위 2가지 요건 모두 충족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 인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음

☞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자치부 예규 제152호, 2021. 02. 16., 일부개정)

1.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
2.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
3.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(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/2 이상 포함)에서 경력인정범위를 인정

## 4. 복무조건 및 보수

### □ 복무조건

- 채용기간 : 임용약정일로부터 2년간

※근무성적평가에 따라 1년 혹은 2년 단위로 연장 가능(최장 5년까지)

- 근무시간 : 주 40시간(09:00~18:00 근무, 12:00~13:00 중식시간)

※코로나19 관련 주말·공휴일 근무 및 초과근무 가능하며 수당 지급함

- 근무부서 :

- 한 의 사 : 보건행정과(서구보건소 1층 통합진료실 내 한방진료실)
- 치과 의사 : 건강증진과(서구보건소 내 1층 구강진료실)

- 복무기준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」를 준용하되,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(주말·공휴일, 야간근무 등)은 부서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

### □ 보수수준

- 연 봉

-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제24조 별표 13(연봉 및 연봉 한계액)

(단위: 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| 하한액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지방일반임기제<br>(5급 상당) | 61,684 | -                    |
| 수당                 | 21,948 | 의료업무수당,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 |

\* 연봉 외 급여(수당)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- 시간외수당, 가족수당, 복지포인트 등 별도 지급함

- \* 최종연봉은 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.
- \*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## 5. 시험방법

### □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(자격기준 요건 등)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

### □ 2차 시험 : 면접시험(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
### □ 기타사항

-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경우 10일간 재공고함.
-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경우 포함
  - \* 1차 공고시 기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자로 같음
- 동점자 처리
  -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: 평정점수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
  -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

## 6. 시험시행일정

| 모집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류전형<br>합격자 발표  | 면접시험       | 최종합격자발표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2021. 5. 31.(월)<br>~ 6. 10.(목) | 2021. 6. 8.(화)<br>~ 6. 10.(목) | 2021. 6. 18.(금) | 2021. 6월 중 | 2021. 6월 중 |

- ※ 채용공고는 서구청 홈페이지(seo.incheon.kr) 채용소식란에 공고
- ※ 면접 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함께 기재 예정
- 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 시간,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

## 7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 :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

나. **접수기간 : 2021. 6. 8.(화) ~ 2021. 6. 10.(목)**

다. 응시원서 접수처 : 서구청 총무과[인사팀]

라.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인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) 또는 등기우편 접수

### ○ 우편 접수 시

- 주소: (22726)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 
(인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)
-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
- 우체국 통상환증서(응시수수료 상당) 동봉
- 응시표 이메일 송부 예정 ☞ 응시원서 이메일 주소 기재
- 응시표는 면접시험 참석 시 출력하여 지참
-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인사담당자(☎032-560-4104)를 통해 접수 확인을위한 전화 요망

## 8. 제출서류

### 가. 응시원서 1부 <서식1>

- ※ 응시수수료 : 10,000원(5급 및 가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)
- 방문접수: 인천 서구 수입증지 날인(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)
- 등기우편 접수: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

## 나. 이력서 1부. <서식2>

- 이력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
## 다.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. <서식3,서식4>

- ※ A4용지 각 3매 내외, 경력 중심으로 작성

## 라. 서류전형 제출서류 양식 1부.<서식5>

### 마.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. (해당자에 한함)

- ※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
- ※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만 인정
- ※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 등 자료 첨부
- ※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,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
- ※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), 법인등기부등본 등 확인 가능 자료 추가 제출
- ※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(공증 필) 첨부

### 바.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.

- ※ 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## 사.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.(추후 원본 확인 예정)

- 해당분야 자격증 제출(의사 면허증)
- 기타 직무분야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(전산관련 자격증 등) 제출(해당자에 한함)

야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<서식6>

자.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<서식7>

차.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.<서식8>

카.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 및 가입의사 확인서<서식9>

## 9. 기타사항

□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서류,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각종 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이 가능합니다.

□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□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□ 제출서류(이력서, 자기소개서,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)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□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□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채용절차 관련문의 : 총무과 인사팀(☎032-560-4104)

○ 담당직무 관련문의 :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(☎032-718-0606)-한의사  
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(☎032-718-0503)-치과의사